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45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 · 조 국 · 김성환 · 박홍근 · 김교홍 · 김영배
한정애 · 강득구 · 김영진 · 안호영 · 전재수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5.

3. 회 부 일 : 2024. 12. 6.

※ 의안번호 : 624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험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구금·보호시설’의 종류에서 ‘보호감호소’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u>보호감호소</u> , <u>치료감호시설</u>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가. ----- ----- <u>치료감호시설</u> -----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가목은 ‘구금·보호시설’을 정의하면서 ‘보호감호소’를 구금·보호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¹⁾

보호감호소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교화하는 보호감호시설이었는데, 보호감호처분이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여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시(2001. 5. 24.)부터 보호감호소를 명시하고 있음.

호소 또한 폐지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폐지된 후 20여년 가까이 지난 보호감호소를 현행법상 구금·보호시설의 종류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